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8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이원록, 김정연) ② (주)포스코건설(이영훈) ③ 롯데건설(주)(하석주) ④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정승진, 강인철) ⑤ (주)엔아이스틸(배종민)

나. 전화번호 : ① 070-4489-9466 ② 031-370-9813 ③ 02-3480-9114 ④ 02-2184-5114 ⑤ 02-758-6789

2. 명칭 : 더블 리브 골형 강판과 역삼각형 래티스거더를 이용한 장경간 데크플레이트 공법 (D-Deck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 철근트러스 거푸집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단위 폭에 2개의 리브가 형성된 골형 강판의 리브 사이의 골에 2개의 상부 철선과 1개의 하부 철선을 래티스 철선으로 연결한 역삼각형 형태의 래티스거더가 설치되고 골형 강판의 각 리브 단부는 경사형 마구리로 폐쇄되어 시공 중 하중은 강판이 지지하고 사용 중 하중은 래티스거더와 추가로 배근되는 보강철근이 지지하도록 하는 장경간 데크플레이트 공법이다.

<범위>

단위 폭에 2개의 리브가 형성된 골형 강판의 리브 사이의 골에 2개의 상부 철선과 1개의 하부 철선을 래티스 철선으로 연결한 역삼각형 형태의 래티스거더가 리브의 상부판에 형성된 단턱에 단순 거치되고 골형 강판의 각 리브 단부는 노치 가공 후 절곡된 경사형 마구리로 폐쇄된 장경간 데크플레이트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5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에 스마트해산물류추진단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한 감찰팀을 폐지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인력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지방해양수산청의 인력 1명(7급 1명)을 종전의 직급(8급 1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0명(8급 2명, 9급 8명)을 행정직군 정원 8명(9급 8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경찰청공고제2019-1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